

# KB금융 내부신고자 보호 정책

2022.7.15.

※ 동 정책은 『그룹 올바른 제보제도 운영지침』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KB금융 내부신고자 보호 정책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.

## 1. 목적

이 정책은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(이하 "그룹사"이라 하며, 지주회사를 제외한 자회사 등을 "계열사"라 한다)의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된 사고가 확대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룹사의 내부자의 제보채널 운영, 제보내용의 조사 및 제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2. 정의

"내부자"라 함은 그룹사의 계약직·파견인력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.

## 3. 제보대상 등

그룹 올바른 제보제도의 제보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- 1. 각 그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사항
- 2.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의한 내부회계관리 제도 등에 위배되는 회계처리 행위
- 3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,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
- 4. 횡령, 배임, 절도, 공갈, 금품수수, 사금융알선, 저축관련 부당행위,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
- 5.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행위
- 6.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
- 7.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그룹차원의 평판리스크를 심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
- 8. 지주회사 또는 계열사 감사업무 담당부서 등의 불법•부당한 감사행위 또는 감사관련 정당한 이의사항
- 9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반하는 부정청탁 또는 금품제공 등의 혐의가 있는 사항
- 10.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을 인지하거나 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(제3자를 통해 채용 절차에 개입하거나,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포함)
- 11.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

#### 4. 제보의무 등

① 내부자는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(임직원 및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제보대상 행위를

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제보방법 또는 계열사 내부자 신고제도를 통해 제보하여야 한다.

- ②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아니하거나 제보를 방해한 자는 제보대상 행위자에 준하여 지주회사 또는 계열사의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하거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소관부서장은 제보자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·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제보자를 내부통제기준 위반자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.

## 5. 제보방법

- ① 제보자는 제보대상, 관련증거 등 제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제보의 경우 별도 양식에 따라 제보하여야 한다.
- 1. 각 그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사항 등에 대한 제보는 별도 양식에 의해서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보하여야 한다. 단,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은 구술(□述)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지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, 구술신고 또는 구술고지를 받는 자는 신고서에 신고자 등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자 등에게 보여주거나 읽어 들려주고 신고자 등이 그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제보는 다음의 방법 중 제보자가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- 1. 소관부서장 앞 등기우편 송부(양식에 제한없이 관계사실을 기술)
- 2. 소관부서의 제보 접수 전용 전화, 내부망, 외부망
- 3. 제보접수를 전담하는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제보채널
- ③ 제보접수를 전담하는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제보채널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제보대상 구분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담당집행임원에게 통보한다.

④ 소관부서는 제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보의 내용이 근거없이 다른 직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종결할 수 있으며, 삭제 또는 종결한 경우에도 그 내용 및 사유를 별도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## 6. 전담직원의 지정

소관부서장은 소관부서 내에 그룹 올바른 제보 제도운영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## 7. 조사 등

그룹 올바른 제보를 통한 제보를 접수한 소관부서장은 지체없이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담당집행임원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.

- 1. 제보접수 후 제보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조사부서 또는 계열사의 관련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, 조사부서는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.
- 2. 조사부서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 대상자, 조사대상 부서 또는 계열사에 자료의 제출,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- 3. 소관부서 이외의 부서가 제3조 제1항이 정한 제보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, 필요한 경우 처리방법 등을 협의한다.

#### 8. 조사결과의 처리

- ① 조사부서장은 조사가 완료된 경우 지체없이 조사결과(행위자 또는 관련자에 대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는 그 조치내용을 포함한다)를 소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관부서장은 준법 감시인 또는 감사담당 집행임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소관부서장은 행위자와 관련자에 대하여 그룹사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.
- ③ 소관부서장은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관련 부점장에게 불합리한 업무절차 등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징계의뢰 시 행위자 본인 또는 관련자에 의한 자발적인 제보인 경우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수준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.

## 9. 제보자에 대한 통보

소관부서장은 제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익명의 제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10. 감사위원회 보고

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담당집행임원은 그룹 올바른 제보제도를 통해 접수된 제보내용의 조치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11. 비밀보장 등

- ① 비밀보장 의무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·간접적으로 알게 된 제보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 등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(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소관부서장은 제보에 따른 조사시 전담직원 및 조사자에 대하여 별도 양식에 따른 서약서를 징구(소관부서가 조사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조사부서장이 조사자에 대하여 징구)하여야 하며, 전담 직원 및 조사자는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## 12. 제보자의 보호

- ① 그룹사는 그룹 올바른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담당집행임원은 제보자가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또는 계열사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담당집행임원은 제보자가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또는 계열사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.

- ④ 시정 요구 등을 받은 부서장 또는 계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한다.
- ⑤ 진술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진술의 내용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임직원을 제보자에 준하여 보호한다.

## 13. 제척조항

제보내용이 최고경영자, 준법감시인, 감사담당집행임원 및 소관부서장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접수사실 보고, 조사, 조사결과의 보고 등과 관련하여 그 직무 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다른 자의 지휘를 받는다.

## 14. 교육

소관부서장은 내부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그룹 올바른 제보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 15. 기록관리

소관부서장은 그룹 올바른 제보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기록을 5년간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